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

(허기회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6일

발 의 자 : 허기회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웅식, 김인호, 문종철,  
신원철, 송재형, 유찬중,  
강구덕, 최영수, 장인홍,  
김경자(양천), 박기열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.

따라서 차별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,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(제3조)
- 나.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제5조)
- 다. 개선교육의 실시(제7조)
- 라.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장애”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”이란 제2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(이하 “개선교육”이라 한다)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**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

2.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개선교육 교재 개발,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
4.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실태조사)**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교육의 실시)**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 
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예산 등의 지원)**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
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,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(계획의 수립) “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(이하 “개선교육” 이라 함)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 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에 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” 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7조(교육의 실시)에 따른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,069,78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,069,780천원으로 연평균 213,956천원임
- 추계의 전제

- 안 제5조에 따른 개선교육 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‘인권교육활성화’의 ‘인권교육교안교재개발’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

※ ‘인권교육활성화’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인권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

-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계대상에서 제외

- 안 제7조에 따른 개선교육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‘인권교육활성화’의 ‘보편적인권교육 지원’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

※ ‘보편적인권교육 지원’은 인권강사가 학급 학교(초중고 특수학교)에 직접 찾아가 학교인권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함

-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1,069,780천원
- 총비용 = 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+ 개선교육 비용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(안제5조)	106,500	106,500	106,500	106,500	106,500	532,500
	개선교육 비용 (안제7조)	107,456	107,456	107,456	107,456	107,456	537,280
	소계(b)	213,956	213,956	213,956	213,956	213,956	1,069,780
총비용(b-a)		213,956	213,956	213,956	213,956	213,956	1,069,780

○  $\sum_{i=1}^5$ (개선교육교재개발비용)<sub>i</sub> = 532,500천원

- 연간 개선교육 교재 개발 비용 = 운영비 + 연구용역비 + 업무추진비  
= 75,900천원 + 30,000천원 + 600천원  
= 106,500천원

· 운영비	75,900	천원
- 매뉴얼및교재제작용역비	20,000,000원 × 1회	= 20,000 천원
- 매뉴얼및교재제작보급	15,000원 × 750교 × 2부 × 1회	= 22,500 천원
- 교안개발제작및인쇄비	400,000원 × 2차시 × 3종	= 2,400 천원
- 교안개발심의회수당	50,000원 × 5명 × 4회	= 1,000 천원
- 학생인권조례국외홍보	10,000원 × 3,000명	= 30,000 천원
· 연구용역비	30,000	천원
- 학생인권조례국외홍보	30,000,000원 × 1식	= 30,000 천원
· 업무추진비	600	천원
- 매뉴얼및교재개발업무협의회	20,000원 × 5명 × 2회	= 200 천원
- 교안개발협의회	20,000원 × 10명 × 2회	= 400 천원

※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'인권교육 교안교재 개발' 예산을 준용하여 작성

○  $\sum_{i=1}^5$ (개선교육비용)<sub>i</sub> = 537,280천원

- 연간 개선교육에 대한 지원 비용 = 운영비 + 업무추진비  
= 105,456천원 + 2,000천원  
= 107,456천원

· 운영비			105,456	천원
-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강사수당	130,000원 × 780교	=	101,400	천원
-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일반수용비	200,000원 × 4회	=	800	천원
-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행사용품비	3,000원 × 10개 × 50개교	=	1,500	천원
- 인권특강운영 강사수당	180,000원 × 2명	=	360	천원
- 인권특강운영 속기원고료	14,000원 × 7장 × 2명	=	196	천원
- 인권특강운영 행사용품비	100,000원 × 2회	=	200	천원
- 인권특강운영 인쇄비	5,000원 × 100부 × 2회	=	1,000	천원
· 업무추진비			2,000	천원
-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사업추진경비	20,000원 × 20명 × 4회	=	1,600	천원
- 인권특강운영 사업추진경비	20,000원 × 10명 × 2회	=	400	천원

※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'보편적인권교육 지원'의 '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' 및 '인권특강운영비' 항목 예산을 준용하여 작성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황훈

분석관 원동아

☎ 02-3705-1285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